의안번호	2201451
의 뢰 인	송옥주의원
회 답 일	2024. 7. 25.
추계번호	24D170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7조의3(폭염·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기상법」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국방부장관 등은 폭염·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7조의3(폭염·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폭염·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안 제17조의3)

○ 개정안은 「기상법」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 등은 폭염·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폭염, 한파로 인한 사망자는 1명이며, 온열 및 한랭 관련 진료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1] 온열 및 한랭 질환 관련 진료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온열질환	육군	794	882	1,081	1,262	146
	해군	32	34	22	46	45
	공군	34	51	56	79	43
	소계	860	967	1,159	1,387	234
한랭질환	육군	540	549	563	552	314
	해군	33	48	17	31	10
	공군	83	25	19	29	10
	소계	656	622	599	612	334
합계		1,516	1,589	1,758	1,999	568

주: 의증 환자가 포함되었으며 동일질병으로 여러 차례 진료시 중복집계되었고, 민간병원 진료 기록은 집계되지 않음.
자료: 국방부

○ 현재, 국방부는 「국방교육훈령」[1]에 근거하여 폭염주의보 등의 발령 시, 온도지수와 훈련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부대운영 및 보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폭염·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 및 보건 관련 조치를 취하고 군인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는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횟수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현 시점에서 동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1) 국방부 훈련 제2923호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